<< 2026 함께하는 원천징수실무 >>
추록(2026.7.22.)

*문의 Tel : 010-8985-8839(문자)
e-mail : 5086674@daum.net

---7월22일 추록---

1. 582페이지 밑에서 10째줄 다음 유권해석 추가

⑨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주식을 취득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그 벤처기업이 인적분할(적격분할)을 하였고 개인투자조합은 분할취득한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됨. 이때 추징되는 소득금액은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서면소득-4244, 2026.2.6.)

2. 324페이지 16째줄 다음 ⑤ 추가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소득-268, 2026.2.6.)

3. 216페이지 밑에서 5째줄 다음 유권해석 추가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소득-514, 2026.2.26.)

4. 216페이지 밑에서 5째줄 다음 유권해석 추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소득-2234, 2026.3.9.)

5. 610페이지 밑에서 8째줄 다음 추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는 공제이나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최종순위로 적용되는 공제임.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3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후연도에 연금게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57, 2026.3.13.)

6. 216페이지 밑에서 5째줄 다음 유권해석 추가

회사가 전환형 인턴제를 실시하여 신규직원을 전환형 인턴으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전환형 인턴제를 통해 입사한 근로자는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지급받았음. 이에 대해 전환형 인턴제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법원의 판결로 회사의 기본연봉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사전법령소득-811, 2021.12.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상기의 배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소득-4193, 2026.3.18.)

7. 640페이지 3째줄 다음 내용 추가

상기 공식 중 조정 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의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소득- 3280, 2026.3.9.)

8. 1002 페이지 4째줄 다음 유권해석 추가

분할법인이 스핀오프방식의 인적분할(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없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을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

9. 877 페이지 밑에서 4째줄 다음 추가

⑧ 투자약정서에 따른 수익분배금의 이자소득해당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이자율과 변제기한 및 강제집행인낙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투자약정서상 투자손실 위험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투자금 금원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수익금 금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조심2025부4057, 2026.2.24.)

10. 364 페이지 17째줄 다음 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그 행사일이 아닌 신주를 실제로 교부받은 날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37, 2025.4.10.)

11. 222페이지 밑에서 12째줄 다음 추가

⑤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더라도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가 되는 것임(서면법규소득-1070, 2026.3.11.)

12. 975페이지 밑에서 12째줄 다음 추가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매도가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함) 과세표준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함(사전법규소득-1204, 2026.3.20.)

13. 583페이지 밑에서 9째줄 다음 추가

투자자들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를 통해 A법인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A법인이 B법인에 인수되어 투자조합이 보유하던 A

법인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투자조합은 동 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예정인 경우에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소득-3554, 2026.4.15.)

14. 582페이지 18째줄 다음 추가

거주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해당 도합이 해외 비상장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함(서면소득-3894, 2026.4.21.)

15. 715페이지 맨 밑줄 다음 추가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 봉사일수는 2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소득-774, 2026.4.21.)

16. 992 페이지 19째줄 다음 ⑧ 추가

⑧ 외국법인이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일부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의제배당의 계산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039, 2026.4.20.)

17. 670 페이지 맨 밑줄 다음 추가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함(서면원천-4, 2026.4.27.)

18. 535 페이지 5째줄

⑬ 비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로 대환대출
금융실명법 제2조의 금융회사등이 아닌 기관의 주택저당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고 새로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

월 이내 차입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원천-3691, 2026.4.27.)

19. 537페이지 밑에서 3째줄

최초 5년은 고정금리, 5년 이후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방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원천-371, 2026.4.27.)

20. 538페이지 6째줄 다음 추가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인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원천-373, 2026.4.27.)

21. 536페이지 맨 밑줄

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의 기준시가는 이후 최초로 고시된 가격으로 그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원천-367, 2026.4.27.)

22. 773 페이지 밑에서 11째줄

⑲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수령하는 퇴직소득 중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사전법규소득-1239, 2026.4.27.)

23. 1208 페이지 4째줄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18, 2026.4.28.)

---7월7일 추록---

1. 193페이지 밑에서 9째줄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원천-3476, 2026.5.21.).

2. 537페이지 밑에서 3째줄

고정금리방식은 상환기간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때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고정금리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333페이지 9째줄

이때 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본인 부담 총액을 말하며 비과세적용금액은 소득령 제17조의 5에 따른 금액이고 이 금액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대상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서면원천-18, 2026.6.8.).

4. 1246페이지 밑에서 9째줄

소득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동안 중단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시행령 부칙(제35349호, 2025.2.28.) 제2조 제2항에 따른 2026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2025년에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을 포함한다(서면법규국조-3904, 2026.6.9.).

5. 740페이지 11째줄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임차하여 주거지로 사용)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원천-2617, 2026.6.18.).

6. 976페이지 밑에서 7째줄

외국 상장 ETF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경우 해당 ETF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576, 2026.6.26.).

7. 417페이지 8째줄

상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대법원 2026두30395, 2026.6.11.).

---

1. 527페이지 5째줄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면원천-1894, 2026.4.28.).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주택의 수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전세사기로 거주하던 빌라를 법원경매로 취득하고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 여 보유하고 있음)이 포함된다(서면원천-541, 2026.4.28.).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 신탁주택(배우자 명의 주택이 신탁 대출로 인해 신탁 사 명의이고 사용수익권이 신탁사에 있으며 임대료도 신탁사 계좌로 입금됨) 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서면원천-157, 2026.5.8.).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서면원천-114, 2026.5.8.).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원천-73, 2026.5.11.).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재건축주택)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관리 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전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서면원천-4196, 2026.5.11.).

2. 536페이지 맨 밑

⑤ 주택분양권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소득공제요건(소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면원천-591, 2026.4.28.).

⑥ 2019년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고 2023.10.4. 아파트 잔금을 청산(임대)하고 2025.12.29.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러한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것이다. 그리고 2023.10.5. 다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 공동소유주택은 소유주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2023.10.5. 아파트 취득 시 2주택 세대에 해당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원천-247, 2026.5.11.).

3. 690페이지 밑에서 9째줄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의 시험응시수수료 및 제34조의 4에 따른 입학전형료 는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수수료 등을 말한다(서면원천-1288, 2026.4.28.).

4. 1206페이지 밑에서 9째줄

⑮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 상금을 전달하는 경우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사전법규소득-67, 2026.5.8.).

5. 667페이지 밑에서 6째줄 다음 6.

6. 소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질 병·부상은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합병증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 중인 고령의 거동 불편자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과 유사한 질병·부상에 해당하고, ②중단 없이 ③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④의료기관의 장이 취업, 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즉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된다(서면원천-3421, 2026.5.8.).

6. 684페이지 5째줄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원천-152, 2026.5.11.).

7. 689페이지 맨 밑줄

바둑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체육시설에 해당 여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하다(서면원천-244, 2026.5.11.).

8. 690페이지 맨 밑줄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원천-4358, 2026.5.11.).

9. 1173페이지 19째줄 다음 해석 추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25두35763, 2026.3.12.).

10. 528페이지 5째줄 다음 추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의 용도는 다가구주택 101호 등으로 호수별로 구분 표시되어 있고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는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하나의 개별주택으로 보아 공시되어 있는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소유 지분별 안분하지 않음)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한다(서면원천-4209, 2026.5.11.).

11. 673페이지 4째줄 다음 5. 추가

5.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원천-1210, 2026.5.14.).

12. 193페이지 10째줄 다음 ④ 추가

④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 11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7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원천-3476, 2026.5.21.).

13. 412페이지 맨 밑줄 다음 ⑨ 추가

⑨ 미국인인 원고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추후 원고는 조특법 제18조의 2 규정이 개정되어 2014.1.1. 이후부터는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7%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2014.12.31.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8조에 의해 2013.12.31. 이전 국내 근로제공자가 2014.1.1. 이후에 국내에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5년간(2022.12.31. 개정으로 20년으로 연장) 특례가 적용됨을 알게 되어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7%(현재는 19%)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조심 2021서6008, 2022.9.14.)에 따라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 하여 전 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말하며(대법원

2006두10023, 2008.7.24.),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등이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7두38812, 2017.8.23.)를 들어 원고와 과세관청의 분쟁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 불과하고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전 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원고와 근로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누8945, 2026.4.10.).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과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두41740, 207.9.7.).

14. 1028페이지 맨 밑줄 다음 17. 추가

17.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처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 28) 조특법 제93조의 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12.31.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나.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용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 7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12.31.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 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명당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납입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

회사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일 것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전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용저축 가입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 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 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 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 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 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응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제1항 제1호 나목(근로소득 요건으로 한 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국세청장은 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또는 연장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전용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환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 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⑫ 전용저축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저축의 확인,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전용저축의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령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 28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 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법 제91조의 28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 7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이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 7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대출채권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 28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 28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 28 제3항 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법 제91조의 28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일은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모두 양도하거나 환매한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 날을 투자일로 본다.

⑦ 법 제91조의 28 제1항 제1호 나목의 거주자가 전용저축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91조의 28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법 제91조의 28 제4항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가입자는 제8항에 따른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법 제91조의 28 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확인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 또는 연장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⑪ 가입자는 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

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15. 600페이지 첫째줄에 다음 11. 추가

11.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소득공제요건

① 다음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12.31.까지 '③'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전용저축")에 가입하고 '2.'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②'에 의한 금액을 소득공제한다(조특법 §91의 28 ①).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나.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용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 7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거주자가 2030.12.31.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특법 §91 의 28 ②).

1명당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③ '②'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조특법 §91의 28 ③).

1. 납입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 의 합계액을 말한다]일 것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할 것

(2)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1)'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전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징세액

① 전용저축 가입자("가입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1)'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 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조특령 제93조의 14 제8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법 제91조의 28 제4항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1)'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추징세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다.
③ 저축취급기관은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축취급기관은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응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 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6. 600페이지 12째줄 다음 ⑧ 추가. 기존 ⑧은 ⑨로 변경

⑧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2026.5.12. 신설)
<적용시기>: 2026.5.12.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17. 443페이지 4째줄 다음 추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91의28	-

18. 601페이지 밑에서 8째줄 다음 추가(간소화 자료 대상 추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소령 §216의 3 ① 6호 사목, 2026.5.22. 개정)

19. 845페이지 17째줄~20째줄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

상기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 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령 §202의 2 ④, 2026.5.22. 개정, 개정규정은 2026.7.1.부터 시행).

20. 848페이지 2째줄 ③ 전부 삭제하고, 다음 ③으로 대체

③ ②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 및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2., 2026.7.1.부터 시행>

1.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2.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되, 법 제1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21. 848페이지 밑에서 7째줄 ⑤ 전부 삭제하고, 다음 ⑤로 대체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상기 '③'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로서 '③ A'에 따른 금액이 'B'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 세차감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22., 2026.7.1.부터 적용>

22. 849페이지 2째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 →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

23. 958페이지 밑에서 6째줄 수정

제91조의 23까지 → 제91조의 23, 제91조의 25, 제01조의 28까지

24. 959페이지 1째줄 수정

개인투자용국채 →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